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5.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9월 23일, 윤종오의원 등 19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9월 2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국토교통위원회(2024.11.1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
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026.4.28.) 상정, 축조심사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2026.4.30.) 상정,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국회의원 윤종오)

노무비, 건설기계대여비, 자재비 등 하도급대금에 대한 체불 방지를 위해 현행법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이는 공공기관 발주에 한정되므로 민간 부분의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법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 발주에만 적용되는 공사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 발주 공사에도 확대하여 하도급대금과 임금 체불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자 함. 또한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급·사용하는 전자카드를 대금지급시스템과 연계하여 건설현장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예외 대상 추가

안 제34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대금지급시스템은 현행법 제34조제9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대금을 청구·수령하는 시스템으로서, 공사 대금의 청구·수령 절차를 투명하게 하여 수급인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공사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하도급업자의 하도급 대금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현행법상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 제도의 필요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음을 감안한 것으로 보임.

다만, 현재 공공공사에서 사용 중인 하도급대금 전자지급시스템 사용에 있어, 발주청이 원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입금할 당시 원도급자의 입금 계좌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채권자에게 계좌가 압류되어 있을 경우에는, 현행 하도급대금 전자지급시스템 구조상 입금된 공사대

금이 하도급자에게 지급되지 못하고 채권자 등에게 압류된 상태로 하도급대금 전자지급시스템에 남아 있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건설공사 범위 확대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수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의 취지는 이와 같이 공공건설공사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는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전자지급시스템의 사용을 민간건설공사 분야까지 확대하여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사례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임.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의 경우 2023년 기준 총 건설업 임금 체불액 4,363억원 중 국토교통부 소속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공사에서의 임금 체불액은 총 임금 체불액 대비 0.06%에 불과한 2억 6,000만원(2023년 설·추석 명절 대비 체불액 점검 결과)인 것으

로 나타난 점을 고려해 본다면, 개정안과 같이 하도급대금 전자지급시스템 이용을 민간건설공사 분야까지 확대할 경우 건설근로자 임금을 포함한 하도급대금의 미지급 사례 발생 방지에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관련 단체에서는 민간공사에 대한 전자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는 국가의 과도한 규제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업체 평가 시 가점부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할인 등과 같은 인센티브 정책을 선행적으로 실시하는 등 민간 시스템의 자율적 사용을 우선적으로 유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음.

종합해 볼 때, 개정안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 및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의 필요성과 관련 업계의 반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 정책적 판단이 필요해 보임.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공사대금 지급의 투명성 제고 및 체불 방지를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도개선 필요성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나 의무화보다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전자대

금지급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됨.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내용을 반영함.